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04,986,000	9,149,580
일반회계	291,714,000	8,751,420
특별회계	13,272,000	398,160
기타특별회계	13,272,000	398,16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882,000	116,46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350,000	70,50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81,000	26,430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510,000	15,300
새마을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360,000	10,800
양수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510,000	15,300
치수사업특별회계	4,363,000	130,89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16,000	12,48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19,709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